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

「지방자치법」 제16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경 상 북 도 지



1. 대표자

-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102-1번지
- 성 명 : 이 정 혜

2. 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어 포항시 예산 60억원을 포함하여 민간투자금 111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전(前) 포항시장과 담당공무원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함

3. 청구이유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구 국토해양부·환경부 통합고시) 제7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은 포항제2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5km에 입지하고 있어 취수시설을 이설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위 산업 단지를 추진해서는 안됨.

○ 따라서,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여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

○ 특히,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이행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4. 연서기간 : 2015년 6월 26일 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5. 연서주민수 : 311명

6. 청구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 열람장소 : 포항시청(민원실), 포항시 각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열람

7. 이의신청

○ 청구인 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감사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53-950-2785, 팩스 053-950-2049)